
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서류안내

※ 부적격 확정 당첨자는 검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※ 검수 기간 이후 부적격에 따른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이 불가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대상	서류발급기준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O	신분증	청약자(본인)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여권 제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	
	O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청약자(본인)	본인 발급용에 한함(용도 : 주택공급계약 체결용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불가	
	O	주민등록표등본	청약자(본인)	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	
	O	주민등록표초본	청약자(본인)	인적사항변경내용,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성명/관계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	
	O	가족관계증명서	청약자(본인)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	
	O	혼인관계증명서	청약자(본인)	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	
	O	출입국사실증명	청약자(본인)	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, 기록 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	
	O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	
	O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	
	O	복무확인서	청약자(본인)	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,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	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O	해외체류 증빙서류	청약자(본인)	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(생업에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	
	O	출입국사실증명	배우자 및 세대원	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'Y'로 설정하여 발급	
추가 서류	O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관계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발급	
	O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택공급신청자(세대주이어야 함)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부 확인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	
	O		피부양 직계비속	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	
	O	혼인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	
	O	출입국사실증명	피부양 직계 존·비속	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'Y'로 설정하여 발급 ※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서 제외 ※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: (만 30세 미만 미혼자녀)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(만 30세 이상 미혼자녀)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발급기간 : 직계 존·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주가 제출할 수 있음)	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O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청약자(본인)	발급기준 : 본인 발급용 / 용도 : 위임용 /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불가	
	O	위임장	-	주택전시관 비치(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/ 인감증명서와 대조)	
	O	신분증, 인장	대리인	대리인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여권 제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	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O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
	O	당첨사실 소명자료	해당서류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

※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공통/추가 서류 외 대리인 신청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합니다. ※ 서류 접수 시 모든 서류는 '상세표기'로 발급하셔야 하며,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분만 해당됩니다. ※ 제출 서류 중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※ 서류 접수 시 자격 검증을 위해 안내 서류 외 추가로 검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작성 및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 또한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